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제9절(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) 신설

개 정 안

제 9 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

- 제 43 조 (구성)** ① 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·도지사, 자치구·시·군의 장, 시·도의회 의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 의원(이하 ‘선출직 공직자’라 한다)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둔다.
- ②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.
- ③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,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- ④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- 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

제 44 조 (기능)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선출직 공직자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 확정 및 공표
2.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실시
3. 당헌 제75조,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구성된 각급 공직후보자추천기구에 선출직 공직자의 현재 임기 중 평가결과 이첩
4. 당무감사위원회에 선출직 공직자 관련 감사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, 당무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이첩 요구
5. 윤리위원회에 선출직 공직자 관련 표창 및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, 윤리위원회 의결 결과 이첩 요구
6. 기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관련 관리 감독

부 칙 (2025. 12. 4) 이 당헌은 12월 4일 제18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□ 자구 수정

현 행	개 정 안
제9절~제18절 (생략)	제10절~제19절 (현행과 같음)
제43조~제101조 (생략)	제45조~제103조 (현행과 같음)